

<b>보도</b>	<b>2025.10.15.(수) 석간</b>	<b>배포</b>	2025.10.14.(화)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부국장 송현철 (02-3145-7645)
	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	담당자	선임검사역 김종현 (02-3145-7632)

## 합법 vs 불법, 유사투자자문 제대로 알아야 피해가 줄어듭니다

- 샷폼 영상 · 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**불법행위 피해 예방** 안내 -

### 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온·오프라인 홍보 매체(유튜브 등)를 통해 홍보 중
  - ※ ('23년) 유튜브 영상 캠페인(유튜버 '슈카' 출연), 라디오 음성광고 제작, 포스터 제작 등 ('24년) 유튜브 영상(금융속 브리핑), 영상(영화관)·음성(라디오) 공익광고 제작, 포스터 제작 등
  - 금년에는 샷폼 유튜버 '**1분 미만**'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·게시\*하고 **카드뉴스**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, 예방방법 등을 안내
  - \* '1분 미만' 채널(구독자: 256만명) 및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
  -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우리원, 한국소비자원, 증권사 홈페이지(MTS) 등에 게시
-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샷폼 영상 및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
  - **홈페이지 배너**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이용과정에서 피해 발생시 피해신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

#### <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 홍보콘텐츠 >

	콘텐츠	주제	채널
1	유튜버 '1분 미만' 샷폼 영상	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및 예방·신고방법	1분 미만·금감원 유튜브
2	카드뉴스		금감원 인스타그램 등 SNS
3	홈페이지 배너		금감원·한국소비자원·증권사

## II. 세부 홍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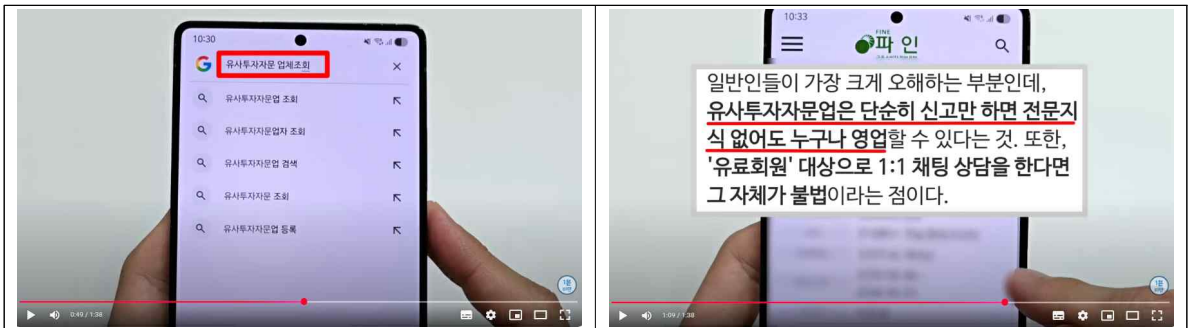


### 1. 숏폼 영상 (유튜버 '1분 미만' 협업)
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, 허위·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방법 소개

-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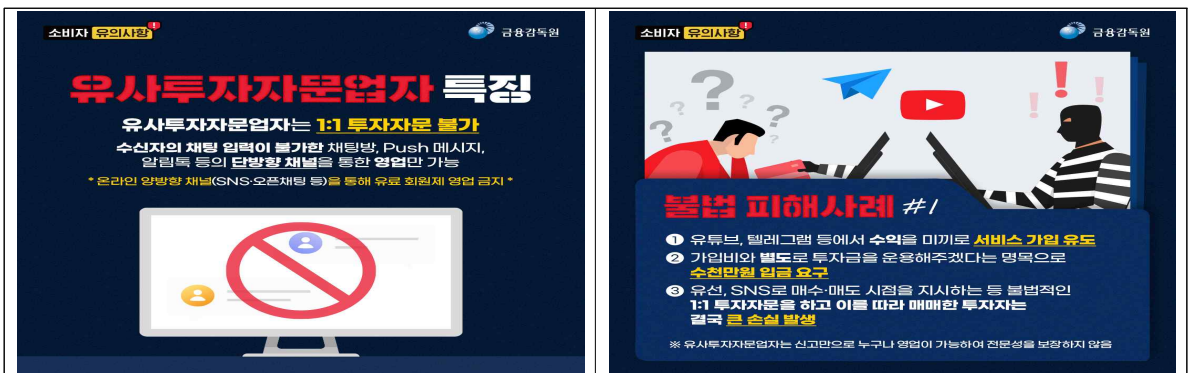
\*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



### 2. 카드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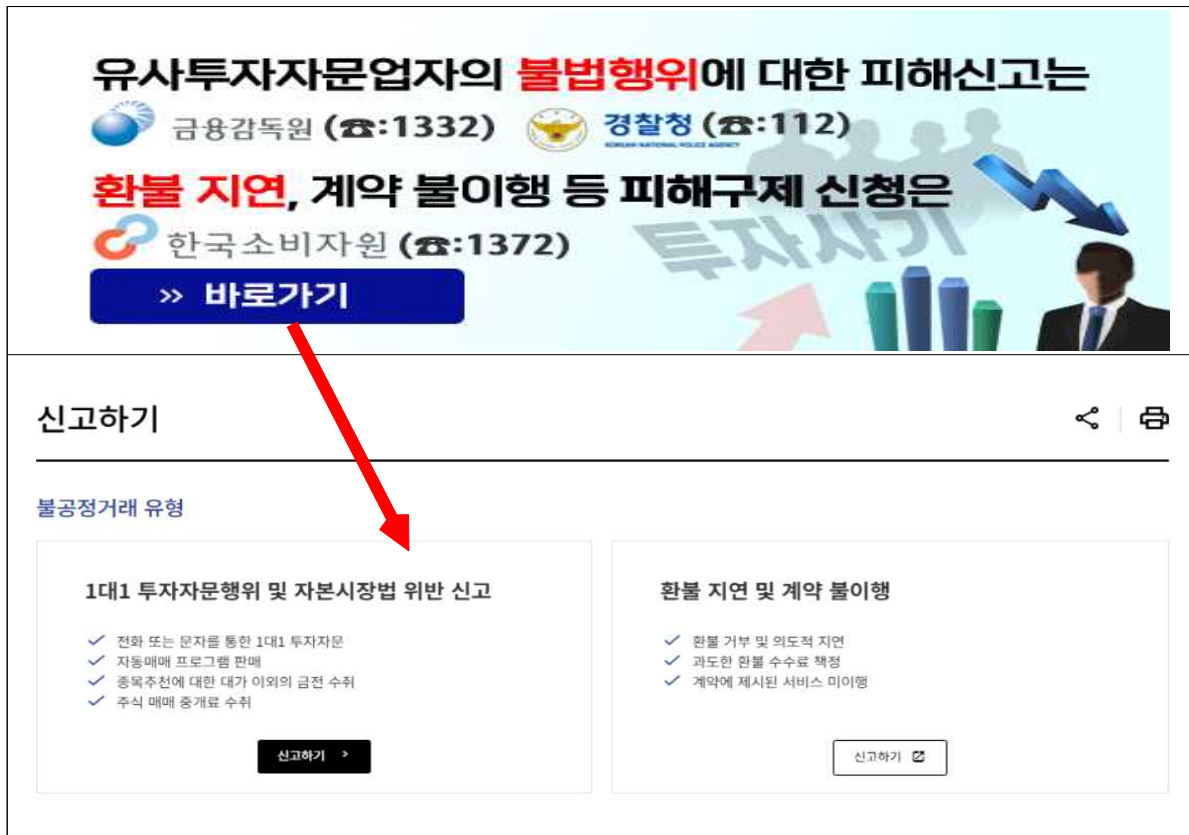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·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·일임,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 소개

-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, 불법행위(1:1 투자자문 등) 발견시 금감원 등에 신고 필요성을 안내



###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 배너

- 금감원, 한국소비자원, 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여 '바로가기' 한 번으로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



## III.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
- 또한, 유사투자자문 단속(일제·암행점검) 및 유관기관(경찰청 등)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**1. 사전적 대응방법**

① OO투자클럽, ■■스탁 등의 명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명심  
 ⇒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,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고 증권사, 투자자문사 등 **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**

② 업체의 허위·과장 광고 유의  
 ⇒ ‘**최소 OO% 수익률 보장**’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·과장 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, 업체가 제시하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**객관적인 자료**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**확인할 필요**

③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 
 ⇒ ‘**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 - 금융회사 정보 - 유사투자자문업자**’에서 업체명, 정보명칭 등을 검색하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

④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(환불 등)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
 ⇒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(회비 포함)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,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**환불조건 및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**

**2. 사후적 대응방법**

① 1: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견시  
 ⇒ **경찰청** 또는 **금융감독원**에 신고(‘**금감원(fss.or.kr) - 민원·신고 - 불법금융 신고센터 - 「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**」)

② 계약해제 및 환불 지연·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 
 ⇒ 계약상 분쟁의 문제로 ‘**한국소비자원(kca.go.kr) - 피해구제 - 피해구제 신청**’ 또는 민사 소송

[인스타그램] <https://www.instagram.com/fsskorea>

[블로그] <https://blog.naver.com/fss2009>

[페이스북] <https://www.facebook.com/fsskorea>

**2025**  
**유사투자자문업자**  
**피해 주의**

**유사투자자문업자란?**

일정한 대가를 받고  
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 
**개발성 없는 조언**을 하는 것  
업으로 하는 자

**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**  
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 
적용받지 않음  
누구나 영입이 가능하고,  
**이용자 보호가 어려움**

**리딩방이란?**  
오픈채팅방, 텔레그램 등의  
온라인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 
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**커뮤니티**

**불법 리딩방이란?**  
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 
리딩방을 운영하는 것

**처벌** 1년 이하 징역 또는  
3,000만원 이하 벌금

**유사투자자문업자 특징**

유사투자자문업자는 **1:1 투자자문 불가**  
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, Push 메시지,  
알림톡 등의 **단방향 채널**을 통한 **영업만 가능**

\* 온라인 양방향 채널(SNS 오픈채팅 등)을 통해 유료 회원제 영업 금지\*

**불법 피해사례 #1**

- 1 유튜브, 텔레그램 등에서 수익을 미끼로 **서비스 가입 유도**
- 2 가입비와 벌도로 투자금을 운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**수천만원 입금 요구**
- 3 우선, SNS로 매수-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**1:1 투자자문을 하고 이를 따라 매매한 투자자는 결국 큰 손실 발생**

※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누구나 영입이 가능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음

**불법 피해사례 #2**

- 1 유료회원들에게만 **IPO(상장) 예정인 비상장주식**의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
- 2 업자가 **미리 매수하여**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여 **투자 손실을 초래**

※ 실제 상장 예정된 바 없는 인터넷 허위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 기망



### 불법 피해사례 #3

- 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가입 후 **중도 환불을 요구**하였으나
- ② 환불을 위해서는 고소, 민원제기 등 **이의제기**를 하지 **않는다는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**하며 **지속적으로 환불 지연**
- ③ 또는, 콜센터로부터 **환불이 완료되었다고** 답을 받았으나 **실제로는 환불 미이행**

### 피해 예방방법 #1

**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 
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 필요**

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 
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 매우 높음

‘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’(fine.fss.or.kr)  
홈페이지에서  
정식 신고 업체 여부 확인

\* 파인 홈페이지 - 금융회사 정보 -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

### 피해 예방방법 #2

계약 해지·환불 거부, 과도한 위약금 등의 피해 발생시,  
[한국소비자원\(kca.go.kr\)](http://kca.go.kr)에서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

### 피해 예방방법 #3

유사투자자문업자의 1:1 자문행위(미등록 투자자문),  
손실보전·이익보장·목표수익률 등의 광고,  
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사·광고를 하는 행위 등  
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,  
[금융감독원\(fss.or.kr\)](http://fss.or.kr)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 
**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또는 경찰청에 신고**

